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. 5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'99. 2. 10(제7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

나. 개정사유

-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

다. 주요내용

-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, 동조 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%를 경감한다.
 -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
 - 제2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하는 날
 - 다만,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코자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키 위한 것으로,
-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,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 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.
-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고 개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 2 【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】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징감한다.

제1호 :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.

제2호 :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.

다만,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<신설></p>	<p>제22조의 2 [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]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한다.</p> <p>제1호 :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</p> <p>제2호 :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득한 날</p> <p>다만,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</p>